프리랜서 용역계약서

"제공자"와 "검수자"는 아래 내용과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【계약 내역】

계 약 번 호	제 202204-03 호
계 약 건 명	간호진술문 프로젝트 녹음 검수 건
계 약 기 간	2022. 06. 07 부터 2022. 07. 27 까지
계 약 금 액	(녹음 검수 완료 1 건 당) 오백원정 (500)
	*원천세 및 비용일체 포함 금액
대금지급조건	2 차 검수까지 완료된 (녹음 검수완료 건 수 * 500 원) 비용 지급
대금 지급일	계약 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
제세 공과금	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(주민세 포함) 3.3%를 원천징수 함
수행업무범위	간호진술문 녹음 검수(스크립트와 발화 일치 여부 확인)
용역제공장소	"검수자"가 희망하는 장소
기 타	1. 계약기간 중 수행업무는 "제공자" 또는 최종고객과의 원계약에 따름. 2. 계약 양 당사자 간에 본 용역계약의 갱신을 위한 서면 합의가 없는 한, 용역관계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.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서면 합의없이 "검수자"가 계속 "제공자"와의 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추후에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인지된시점으로부터 계약은 즉시 종료된 것으로 본다. 3. 제출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기타 "제공자"의 요구서류

【계약 조건】

제 1 조 계약의 목적

본 계약의 목적은 "제공자"와 "검수자"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"검수자"가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"제공자"와 "검수자"의 상호의무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계약의 변경

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"제공자"와 "검수자" 쌍방이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"제공자"와 "검수자"의 책임과 의무

- 1. "검수자"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용역, 서비스 및 지원을 성실히 제공 또는 수행한다.
- 2. "검수자"는 부여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며, "제공자"의 자격검증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3. "검수자"가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 등으로 "제공자"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"제공자"의 청구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4. "검수자"가 근무 중 부주의로 기인하거나, 근무 외 발생된 상해, 질병, 사망 등 사고에 대해 "제공자"에게 그 비용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5. "제공자"는 "검수자"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, 자료, 서류를 제공한다.

제 4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- 1. "검수자"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근무상의 지장을 초래하였거나, "제공자"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"제공자"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. "제공자"는 "검수자"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청 받고도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3. "제공자"는 "검수"의 주어진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4.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1)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2)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3) 어음 및 수표의 부도,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(가처분 및 가압류 포함), 파산선고의 신청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5 조 기밀유지

"검수자"는 업무상 취득한 모든 기밀을 용역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며, 산출물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련자료를 "제공자"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 이를 위반하여 "제공자"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

"검수자"는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.

제 7 조 해석 및 분쟁 해결

본 계약서에 대한 쌍방의 견해가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르도록 하며, 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8 조 특약사항

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"제공자"와 "검수자"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2022 년 06 월 07 일

제공자: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, 14 층

주식 회사 닥터웍스

대표이사 이희 상

검수자:

경기도 김포시 걸포 1로 40

주 소: 103-401

주민등록번호: 910117-1932416

성 명: 윤인재